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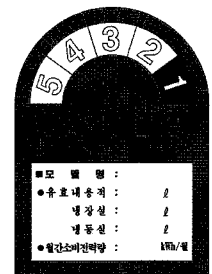
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

(전기드럼세탁기, 선풍기 등 2개 품목 추가)

-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하고, 일정기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·판매를 금지하는 「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 고시(05.5.6)하여 2006.1.1부터 시행키로 함.
- 이번 개정에서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보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드럼세탁기와 국내보급률(가구당 1.8대 이상)이 매우 높은 가전제품중 하나인 선풍기 등 2개 품목을 확대하고, (현행 14개 → 16개 품목)
 - * 전기드럼 세탁기 : 연간 40만대 보급(추정), 소비전력은 850~1,050W/대
 - * 선풍기 : 연간 200만대 보급(추정), 소비전력은 20~80W/대
- 기 시행중인 형광램프용 안정기(직관형 40W)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8% 강화하고,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목표소비효율을 형식별로 0.4~7.7% 강화함.
- 시행시기는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6.1.1.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효율 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,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·판매가 금지됨.
- 산업자원부는 품목확대 등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하여 연간 78백만KWh(약 86억원)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〈 참고 〉

- * 소비효율등급표시 : 효율에 따라 1~5등급의 기준을 정하고, 해당품목의 효율을 기준에 따라 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여 고효율제품을 유도.
- * 최저소비효율기준 : 품목별로 정하는 소비효율의 하한선으로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의 기준과 같음. 동 기준 미달시에는 생산·판매를 금지함.
- * 목표소비효율 : 일정 시점까지 제품별로 달성해야하는 소비효율.



-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는 미국, 캐나다, EU, 호주, 일본 등 각국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가정·산업 부문의 주요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.

- 「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 개정 주요내용 -

- 대상품목 확대 : 2개 품목(현행 14개 품목 → 16개 품목)

- 전기드럼세탁기 (소비전력 : 850W~1,050W)

- 최근 편리성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전기드럼세탁기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큼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개발·보급이 필요함.

- ※ 추정 보급 대수 : 2003년 30만대, 2004년 40만대

- 적용범위 : 표준세탁용량이 13kg 이하인 가정용 드럼식 세탁기.

- ※ 일반 전기세탁기는 2001.1.1.부터 시행중

- 최저소비효율기준 : 125 Wh/kg (2006.1.1.부터 적용)

- 소비효율을 65, 80, 95, 110, 125Wh/kg 기준으로 각각 1~5등급을 부여

- 선풍기 (소비전력 : 20W~80W)

- 선풍기는 보급대수가 많고 에어컨과 함께 효율관리를 통해 여름철 피크전력 관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됨.

- ※ 추정 보급 대수 : 2003년 200만대, 2004년 200만대

- 적용범위 : 날개의 지름이 20cm 이상 40cm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

- 최저소비효율기준(표준풍량[m³/min]/소비전력[W]) : $0.0156 \times (\text{각 모델별 날개지름}) + 0.136$
(2006.1.1.부터 적용)

- 목표소비효율과 당해 모델의 소비효율비인 1.0, 1.3, 1.6, 1.9, 2.2 을 기준으로 각각 1~5등급을 부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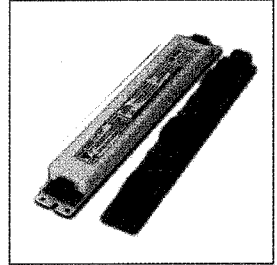
※ 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(16개 품목)

: 전기냉장고, 전기냉동고, 김치냉동고, 전기냉방기, 전기세탁기, 식기세척기, 전기냉온수기, 전기 밥솥, 전기진공형소기, 백열전구, 형광램프, 형광램프용안정기, 안정기내장형램프, 가정용 가스보일러 + 선풍기, 전기드럼세탁기

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강화 : 2개 품목

• 형광램프용 안정기(직관형 40W형)

- 40W 형광램프와 연결되어 전류의 증가에 따른 형광램프의 파손을 방지하는 장치로 동 램프의 효율기준상향(2004.1.1.)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정기 효율기준도 상향 조정함.
-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 : 1.00 → 1.18 (2006.1.1.부터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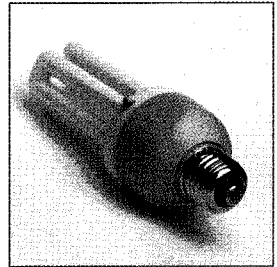


※ 현재 정부에서는 조명기기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안정기 40W 32W로

대체하기 위해 ① 40W 직관형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안정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② 32W 형광램프용안정기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 2가지의 정책을 취하고 있음.

• 안정기내장형램프

- 램프와 안정기가 일체로 된 기기로 '05년 4월 현재 상위 등급인 1, 2등급 제품이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- 기준 강화에 따른 등급간 재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에게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을 유도함.
- 목표소비효율기준 강화



(단위 : lm/W)

구분	소 비 전 력	현 행	개정(안) (2007년 12월 31일까지)
기 본	10W 미만	48.3	52.0
	10W 이상 15W 이하	55.2	58.0
타 입	15W 초과 20W 이하	66.7	67.0
	20W 초과	66.7	69.0

- 목표소비효율기준 강화에 따라 소비효율 등급부여 기준이 조정됨 (2006.1.1.부터 적용)

■ 제도개선

- KS규정을 반영하여 안정기내장형 램프 소비효율 측정시 실용성 가속평가를 삭제함.
- 인터넷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.

[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보도자료 2005년 5월 3일]